

<죽전캠퍼스\_중소기업 계약학과>

2026학년도 전기  
신입학 모집 요강(제14기)

창조적 리더십을 갖춘 전문경영인 육성



2025. 10.

**DKU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계약학과(글로벌e-SCM학과)

- 원서접수기간(온라인 접수) -  
2025.11.05.(수) ~ 2025.12.04.(목)까지

## “글로벌e-SCM 석사과정” 제14기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본 과정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계약학과 석사과정입니다. 글로벌e-SCM학과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에게 e-Marketing, SCM, 무역, 물류에 대한 실무 및 이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 ①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
- ② 2025. 11. 05(수) ~ 신입학 모집 기간 중 채용된 중소·중견기업의 임직원

### 글로벌e-SCM학과는

- ① 현장중심형 커리큘럼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 ② 물류관리사 자격증(5과목 중 4과목 면제) 취득 지원
- ③ 직장인을 위한 토요일 전일제 수업(필요시 평일 야간수업) 등 새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본 프로그램의 기업 측면에서의 장점은

- ① 소속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② 직원의 애사심 고취      ③ 기업경쟁력 강화
- ④ 기업의 학습문화 조성          ⑤ 기업의 해외 마케팅능력 향상
- ⑥ 무역/물류 효율화를 통한 경비 절감      ⑦ 능력 있는 직원의 장기재직 유도가 가능합니다.

### 학생 본인에게는

- ① 자기계발 및 업무능력 제고      ② 국제물류/무역/SCM 전문지식 습득
- ③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기회      ④ 박사학위 연계가 가능합니다.

동 석사과정에 참여하시어 중소·중견기업을 이끌어가는 창조적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  
**학과사무실 : 031-8005-2225~6**



# 목 차

01	모집과정	1
02	모집학과 및 전공	1
03	지원자격	1
04	등록금 및 부담금	2
05	전형방법 및 일정	3
06	우선선발 대상자	3
07	등록금 부담 추가 경감 대상자	4
08	기타 특전	4
09	강의운영 요일 및 시간	4
10	유의사항	4
11	인터넷 접수절차	5
12	제출서류	6
13	전형료	7

## 【붙임】

•	입학원서 및 별지 제6호, 7호, 10호, 11호 서식	8
•	민간부담금 잔액 처리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19

# 2026학년도 전기 신입학 모집 요강(제14기) - 글로벌e-SCM학과 -

**0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2년, 4학기)

**02 모집학과 및 전공**

모집학과	모집전공	모집과정	수업진행	모집인원
글로벌e-SCM학과	글로벌e-SCM전공	석사학위과정 (재교육형)	토요일 전일제	20명
		석사학위과정 (재교육 동시채용형)		

- 1)재교육형: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로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수료 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자를 말함
- 2)재교육 동시채용형: 신입학 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신입학 모집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정부지원 등록금을 100% 지원받으며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자를 말함

**03 지원자격**

- 가. 2026.02.28.까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분	내용	참여기업 선발 제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b>중소기업</b>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중견기업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b>중견기업1(3천억 미만), 중견기업2(3천억 이상)</b> 로 나누어 지원 가능하며, 등록금 지원 비율이 각각 40%와 0%로 상이함(담당자에 문의)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학생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	

구분	내용	참여기업 선발 제한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교육형의 경우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참여기업에서 학기개시일(봄학기 3월1일, 가을학기 9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로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아니한 경우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근무 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함</li> <li>·재교육 동시채용형의 경우 참여학생은 근로계약 또는 채용약정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하며, 학위과정 중 채용약정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재직할 수 없음</li> <li>·재교육형의 동시채용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함. 다만, 신입생 모집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재교육형 동시채용에 참여할 수 있음</li> </ul>	

#### 04 등록금 및 부담금

##### 가. 등록금

- 입학금 : 980,000원
- 수업료 : 2025년 기준 수업료는 3,020,000원(매년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고지에 따라 소폭 변동, 추후 공지)

##### 나. 부담비율

#### <재교육형>

기업구분	교육비(등록금)			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참여기업	참여학생	
중소기업	65% (1,963,000원)	17.5% 이상 (528,500원 이상)	17.5% 이하 (528,500원 이하)	100% (3,020,000원)
중견기업1	40% (1,208,000원)	30% 이상 (906,000원 이상)	30% 이하 (906,000원 이상)	
중견기업2	0% (0원)	50% 이상 (1,510,000원 이상)	50% 이하 (1,510,000원 이상)	

- ※ 중견기업1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3,000억 미만 중견기업  
중견기업2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3,000억 이상 중견기업

#### <재교육형 동시채용형>

기업구분	교육비(등록금)			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참여기업	참여학생	
중소기업 중견기업	100% (3,020,000원)	0% (0원)	0% (0원)	100% (3,020,000원)

## 0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 서류전형 50%[학부성적(25%)+재직기간(25%)] + 면접전형 50%

나. 전형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2025.11.05.(수)~12.04.(목)까지 24시간 접수 가능	· 진학사( <a href="http://www.jinhakapply.com">www.jinhakapply.com</a> )를 통해 접수 · 인터넷 접수(우편, 방문접수 불가)
서류제출	2025.11.05.(수) ~ 2025.12.05.(금) 까지	·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접수 후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제출 (단, 토/일요일 제외) ☞ 2025.12.05.(금) 우체국소인까지 인정 · 글로벌e-SCM학과 사무실 (우)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상경관 413호)
전형일시 및 방법	2025.12.17(수) 14:00 예정	· 비대면 면접(전화, 영상, 페이스북 등) · 전형(면접) 방법은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025.12.22(월) 14:00 예정	· 개별통보
등록금 납부기간	추후 안내	· 본교 지정 은행 계좌에 납부

※ 상기일정 및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06 우선선발 대상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 사업”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참여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근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자
-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07 등록금 부담 추가 경감 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참여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정부지원을 10% 상향
  -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된 근로자
- 다음에 해당하는 참여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정부지원을 5% 상향
  - 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과제에 참여한 근로자
  -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08 기타 특전

- 재교육 동시채용 참여기업이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할 수 있음
-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할 시 혜택
  -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물류관리사 관련 4개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물류관리사 시험 5과목 중 4과목 면제
- 주말(토요일) 전일제 수업으로 학점 이수 가능
- 대학의 전공학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본 대학교 박사과정에 응시할 수 있음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 이용시 할인(본인 20%, 직계존비속 10%)
- 학위취득제도 선택 :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대체 선택 가능

## 09 강의운영 요일 및 시간

- 강의요일 : 매주(토), 학과 운영상황 또는 기업의 요청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강의시간 : 1교시(09:00~11:50), 2교시(12:00~14:50), 3교시(15:00~17:50)

## 10 유의사항

- 지원자 유의사항
  -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에 의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서접수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을 인정함

- 인터넷 원서접수 후 **기한 내에 제출서류 미제출 시 사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 **입학 직전 퇴직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 취소**됨
- 입학원서 기재(입력)사항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
- 전형료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최종 원서접수 후에는 접수취소, 전형료 환불, 서류반환은 불가하며**,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입학 후 본인의사에 의해 해당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 및 지급되었던 보조금 환수조치**됨 (다만, 산업체의 폐업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여 타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계약학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재교육 동시채용** 참여학생은 근로계약 또는 채용약정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과거 근무 경력이 없어야 하며**, 학위과정 중 채용약정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재직할 수 없음
- 참여학생은 **재교육형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 재교육 동시채용형은 2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3자 계약서 내의 추가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하여 약정함
- **휴학이 허용되지 않음** (다만 출산·육아휴직·질병·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2학기 내에서 휴학을 허용할 수 있음)
- **합격 후, 출신대학 학력조회 시 외국대학 주소, 전화번호, 학적담당자 성명, 이메일 주소 등 필요한 정보제공에 협조**하여야 하며, 본교의 학력조회 협조요청에 불응할 시 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이후에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 재직여부 확인

- 재학하는 동안 매 학기 등록 전 재직여부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보증보험

- 보증보험증권 가입이 안될 시 **합격이 취소**됨
- 합격자는 매 학기 정보보조금 신청 전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주관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11 인터넷 접수절차

① 단국대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접속([cms.dankook.ac.kr/web/giba](https://cms.dankook.ac.kr/web/giba)) → ② 원서접수 배너 클릭 → ③ 유의사항 확인 및 지원사항 입력 → ④ 전형료 결제 → ⑤ 입학원서 및 표지 출력 → ⑥ 구비서류 발송 → ⑦ 제출서류 도착 확인

① 단국대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접속(<https://cms.dankook.ac.kr/web/giba>) → 원서접수 바로가기

② 원서접수 배너클릭 : 원서접수 사이트로 접속([www.jinhakapply.com](http://www.jinhakapply.com))

- ③ 유의사항 확인 및 지원사항 입력 : 인터넷상에서 지원 시 유의사항 확인 후 입력
- ④ 전형료 결제 :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 계좌이체를 이용
- ⑤ 입학원서 및 표지 출력(입학원서, 우편발송용 표지 출력)
- ⑥ 구비서류 발송 : 입학원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봉투에 넣어 우편발송용 표지를 부착한 후,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하여 글로벌e-SCM학과(상경관 413호)에 제출함.
- ⑦ 제출서류 도착 확인 : 제출 2~3일 경과 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도착확인 및 미비서류 확인

※ 인터넷 원서접수 문의처 : (주)진학어플라이 : [www.jinhakapply.com](http://www.jinhakapply.com)

· 콜센터 : 1544-7715 / · Fax : 02-722-5453 / · e-mail : [apply@jinhakapply.com](mailto:apply@jinhakapply.com)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 홈페이지 : [cms.dankook.ac.kr/web/escm](http://cms.dankook.ac.kr/web/escm)

· 학과사무실 : 031-8005-2225~6 / · Fax : 031-8021-7416 / · e-mail : [hyunkooheo@dankook.ac.kr](mailto:hyunkooheo@dankook.ac.kr)

## 12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부수
입학원서	·인터넷 출력 후 제출(반명함판 사진 인터넷 업로드)	1부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예정)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예정)증명서 제출 후, <b>2026.02.28(금)까지</b> 졸업증명서(학사학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평균성적 기재 <b>학부 편입생은 최종대학 및 전적대학 증명서 모두 제출</b>	1부
참여기업 신청서 -재교육형 [별지 제6호 서식] -재교육 동시채용형- [별지 제7호 서식]	·참여기업 대표이사 직인 날인 후 제출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최근 결산 재무제표(중견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확인서 ☞ <a href="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a>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 <a href="https://www.nhis.or.kr/nhis/index.do">https://www.nhis.or.kr/nhis/index.do</a> 사업장 로그인 후 사업장 적용 통보서 발급	각1부
입학 추천서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	·참여기업 대표이사 직인 날인 후 제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a href="http://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a> → 개인회원 로그인 후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 <a href="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a> 로그인 후 My NTS에서 발급	각1부
3자 계약서 -재교육형- [별지 제10호 서식] -재교육 동시채용형-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기업, 참여학생 등록금 부담비율 반드시 기재 (기업 17.5% 이상, 학생 17.5% 이하로 작성하며 총합이 35%가 될 수 있도록 작성) ·의무근무기간 기재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 서명 후 3부 제출	3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여부 체크 ·동의자 성명 기입 서명 후 제출	1부

제출서류	세부내용	부수
근로계약서 -재교육 동시채용형-	·근로계약서(재교육 동시채용형 지원자만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가입이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각1부
등록금 잔액처리 동의서	·잔액처리동의서	1부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기업(신용)정보 체크한 뒤 서명 후 제출	1부
참여기업 국세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후 제출	1부
참여기업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후 제출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최근 결산년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후 제출	각1부
회사소개서	·회사소개서 1부 제출	1부
우대사항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증빙자료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계약학과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진학하는 근로자 (졸업학과가 계약학과인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각1부

※ 재교육형, 재교육 동시채용형의 서류 양식이 다르니 필히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발급 후 30일 이내 서류만 유효하며, 개명한 사람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제출

**13 전형료 : 70,000원(인터넷접수 수수료 포함)**

☎ 031)8005-2225~6 / Fax : 031)8021-7416 / Email : [hyunkooheo@dankook.ac.kr](mailto:hyunkooheo@dankook.ac.kr)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상경관 413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cms.dankook.ac.kr/web/escm> ⇨ 대학원 원서접수 바로가기









##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 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3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명칭, 계약학과 유형, 학위종류, 학생정원, 학생모집 시기, 학점, 학습구분,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학과 명칭	유형	학위	참여인원	모집시기	학기/이수학점	학습구분	운영 기간
글로벌e-SCM학과	재교육형	석사	1명	봄 학기	4학기/30학점	주말	2026.3~2028.2

**제4조(학생 선발)**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를 자격 심사 후 입학을 허가하되,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라 학생 및 기업을 선발해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 그리고 “참여기업 대표”와 연 1회이상 협의에 의하여 편성하되, 운영지침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참여기업 대표”가 기존 교육과정에 동의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추가 요구 및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현장실습, 원격 등으로 한다.

**제7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주관대학의 장”의 학사 관리에 의하되, 주말, 야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학기 종료 후 “참여기업”에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통보하고, “참여기업”은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9조(등록금 납부)** ①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은 아래 등록금 부담비율에 따라 산출된 등록금 부담금액을 “주관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등록금 부담비율 (100%)	정부보조비율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 부담비율	참여학생 부담비율
	65%	17.5%	17.5%

②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등록금은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기준등록금”을 근거로 산정하며, 해당 기준등록금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

③ 기한 내에 “참여학생” 또는 “참여기업”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 기준은 운영지침 제18조와 제20조에 따른다.

**제10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1년 + \_\_\_년

**제11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12조(학위과정지원)**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학위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고지의무)**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관대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학생을 제재할 수 있다.

**제14조(등록금 반환)**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5조(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주관대학의 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지해야할 경우,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참여학생”에 대해서 해당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해당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제16조(참여기업 시설사용)** “주관대학”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참여기업”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대학 시설사용)** “주관대학”은 “참여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8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19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준용조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대학”의 학칙, 운영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    년    월    일

붙임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주관대학의 장”	단국대학교	총 장	안 순 철(서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서    명)
“참여학생”	○ ○ ○ (주)		○ ○ ○(서    명)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단국대학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한 학생선발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무실 전화, 소속, E-mail, 직위, 휴대전화, 학력)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3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명칭, 계약학과 유형, 학위종류, 학생정원, 학생모집 시기, 학점, 학습구분,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학과 명칭	유형	학위	참여인원	모집시기	학기/이수학점	학습구분	운영 기간
글로벌e-SCM학과	재교육형	석사	1명	봄 학기	4학기/30학점	주말	2026.3~2028.2

**제4조(학생 선발)**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를 자격심사 후 입학을 허가하되,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라 학생 및 기업을 선발해야 한다.

**제5조(채용의무)** ①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학기 개시일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참여학생”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제시한 고용조건을 과도하게 변경할 경우 “참여학생”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3자 계약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대학의 장”은 제2항의 해약 요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 그리고 “참여기업 대표”와 연 1회이상 협의에 의하여 편성하되, 운영지침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참여기업 대표”가 기존 교육과정에 동의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추가 요구 및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현장실습, 원격 등으로 한다.

**제8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주관대학의 장”의 학사 관리에 의하되, 주말, 야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학사관리)**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학기 종료 후 “참여기업”에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통보하고, “참여기업”은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10조(등록금 납부)** ①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등록금은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기준등록금”을 근거로 산정하며, 재교육형의 동시채용은 산정된 등록금 전액에 대해 정부가 보조한다.

**제11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최소 2년 간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2년 + \_\_\_\_ 년

**제12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13조(등록금의 반환 등)**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4조(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주관대학의 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지해야할 경우, 학위과정을 수료

하지 못한 “참여학생”에 대해서 해당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해당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제15조(참여기업 시설사용)** “주관대학”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참여기업”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대학 시설사용)** “주관대학”은 “참여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7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18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준용조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대학”의 학칙, 운영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 년 월 일

- 붙임 :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중소기업계약학과 근로계약서 1부.

“주관대학의 장”	단국대학교	총 장	안 순 철 (서 <u>    </u>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 (서 <u>    </u> 명)
“참여학생”	○ ○ ○ (주)		○ ○ ○ (서 <u>    </u> 명)



## 민간부담금 잔액 처리 동의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기업/학생)이 발생하였을시 학교 운영비로 귀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가. 발생사유 : 사업비 잔액 및 사업비 계좌 이자 발생

나. 처리방침 : 각 학생과 기업에 환수해야할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학교 운영비로 귀속

위와 같이 민간부담금 잔액을 학교 운영비로 귀속시키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 (서    명)

“참여학생”    ○ ○ ○ (서    명)

단국대학교 총장 귀하

##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 당사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상태인가?  
(징수유예는 제외)

( 예, 아니오 )

2. 신청일 현재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예, 아니오 )

3. 신청일 현재 파산, 워크아웃, 기업 및 대표(이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예, 아니오 )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